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서 정 두**

-
- I. 서 언
 - II. L/C 서류심사기준의 발전
 - III. UCP 서류심사기준상의 문제점
 - IV. 결 언 - 실무상 유의점
-

I. 서 언

무역계약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에 의한 대금결제에 합의된 경우에는, 수출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한, 은행은 수입자가 선적품의 하자나 사기 등의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이 제시를 정히 수리(지급·인수)하거나 매입하여야 한다.¹⁾ 은행은 제시된 서류 이외의 기초적 거래나 무역업계의 다른 상관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²⁾

신용장거래의 경우 은행은 단지 서류로 거래할 뿐이며,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으로 거래하지 아니한다(UCP 600 제5조). 따라

* 이 논문은 2007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1) The bank must pay even though the applicant alleges fraud, if, in fact, there is no fraud. (*Unifirst Fed. Sav. Bank v. American Ins. Co.*, 905 F.2d 208 (8th Cir. 1990).

2) The bank has no duty to notify the applicant before paying the beneficiary that presents conforming documents, notwithstanding facts that the underlying transaction required the beneficiary to notify the applicant of its draw (*Five Star Parking v. Philadelphia Parking Auth.*, 703 F. Sup. 20 (ED Pa. 1989).

서 은행은 수출자의 제시를 심사하여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동 제14조 a항).

문제는 신용장거래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하여 UCP, ISBP 등 국제관습의 명문규정이 있고 그동안 학계의 많은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무역현장에서는 서류일치성 여부를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업계의 수출보험계약 UNPAID 사고건에서 필자가 서면으로 공식의견을 피력한 46건 중의 39건(84.8%)이 서류일치성 여부에 관련된 분쟁이었다.

흔히 신용장서류 중에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명세와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엄격일치원칙의 적용), 기타 서류상의 명세는 이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재하여 “상당하게” 일치하여도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극히 편협되고 피상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용장 서류관련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기준은 가장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는 반면에, 이에 관한 국제관습은 시대의 흐름과 지역에 따라 부단히 변화·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UCP와 UCC의 경우 신용장서류의 일치성 심사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관습의 차이와 변화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장 서류심사기준으로서 소위 엄격일치성과 상당일치성 이론의 발전에 관한 문헌적 비교 분석을 토대로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UCP 600상에 규정된 서류심사 일반조항의 주요내용을 해설하고, 이것이 기존의 ISBP, UCC, 그간의 ICC 공식의견이나 은행관습에 비추어 볼 때 모순되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무상의 유의점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L/C 서류심사기준의 발전

1. 서류일치성 이론의 대립³⁾

신용장(L/C) 서류일치성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 왔다. 첫째, UCP나 ISBP⁴⁾ 등 신용장업계의 표준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입장이 있고, 둘째 신용장법의 다수 판례에 따라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소위 “엄격일치성 규칙”이 대립된다. 다만 소위 “상당일치성 규칙”, 형평법(equity) 등의 법적 개념에 의존하는 일부 판례도 있다.⁵⁾

현재 신용장법의 엄격성 이탈은 그 고유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의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일치성 규칙이 통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동 이론의 설득력은 줄어드는 추세이다.⁶⁾ 특히 수익자 지향적인 엄격일치성 규칙은 최근 일치하는 서류의 사기(fraud)가 빈발하며, 이는 권리포기(waiver)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유발할 수 있고 사기서류의 수리거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1) 엄격일치성 규칙(strict compliance rule)

엄격일치성 규칙은 전통적인 신용장 관습법과 다수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다.⁷⁾ 예컨대 미국의 North Woods Paper Mills, Ltd. v. National City Bank 사

3) 서정두, “수출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일치성의무에 관한 관습적 해석기준”,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2, pp. 104~107.

4)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edited by ICC Banking Commission, 2002. 10.

5) One commentator argues, however, persuasively that the substantial compliance rule of contract law does not apply to the beneficiary-issuing bank setting as a matter of contract law. See Note, “Letters of Cred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s,” 50 *Fordham L. Rev.* 843 at p. 863 (1982).

6) Green, “Letters of Credit and the Computerization of Maritime Trade,” 3 *Fla. International Law Journal* 221 (1988).

7)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09, an issuer shall honor a presentation that, as determined by the standard prac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e), appears on its face strictly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건⁸⁾에서 수익자가 실제 금액보다 낮은 환어음과 송장을 제시한 후 별도의 손실보전을 위한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은행은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일찍이 *Equitable Trust Co. v. Dawson Partners* 사건⁹⁾에서 Sumner 경이 천명하고 엄격일치성의 기준으로 알려진 금언, 즉 “서류는 거의 동일하거나 또한 정당하여야 함에는 어떠한 여지가 있을 수 없다.”(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라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National City Bank v. Seattle National Bank* 사건¹⁰⁾에서 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설탕] 또는 신용장이 기초하고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하여는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영국의 경우도 *J.H. Rayner & Co. v. Hambros Bank, Ltd.* 사건¹¹⁾에서 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과 동일하게 “1,400 tons Coromandel groundnuts”라고 기재되었으나, 선화증권은 물품명세란에 “machine shelled groundnut kernels”의 기재와 함께 난외에 “OTC C.R.S. Aarhus”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신용장이 송장과 선화증권 모두 완전한 물품명세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시는 하자 있고 불일치한 명세의 서류는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¹²⁾

기타 엄격성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서류는 하자가 된다. 예컨대 i) 신용장은 “California Whites Petaluma extras”를 요구하였으나 송장상에 “Petaluma Ranch extras”라고 기재된 경우¹³⁾, ii) 신용장은 “ladies sweaters, dresses, pants and skirts”를 언급하였으나 송장상에 “woolen knitwears”라고 언급된 경우¹⁴⁾, iii) 신용장은 “100% acrylic yarn”을 요구하였으나 송장상에 “imported acrylic yarn”라고 기재된 경우¹⁵⁾ 또는 iv) 신용장 명세는 “5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5-113 and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applicant, an issuer shall dishonor a presentation that does not appear so to comply.”(UCC Sec. 5-108(a)).

8) 121 NYS 2d 543 (Sup. Ct. 1953);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Rev. ed., Warren · Gorham & Lamont, 1996, p. 6-9.

9) *Equitable Trust Co. v. Dawson Partners*, (1927) 27 Lloyd’s List L.R. 49.

10) *National City Bank v. Seattle National Bank*, 121 Wash. 476, 209 P. 705 (1922).

11) *J.H. Rayner & Co. v. Hambros Bank, Ltd.*, (1942) 2 All E.R. 694 (CA).

12) Article of 14(e) of the *Uniforms Customs* would yield a different result.

13) *Portuguese-Am. Bank v. Atlantic National Bank*, 193 NYS 423 (1922).

14) *Oriental Pac., Inc. v. Toronto Dominion Bank*, 357 NYS 2d 957 (Sup. Ct. 1974).

ceiling fan”이나 송장명세가 “52 + ceiling fan”인 경우¹⁶⁾ 등을 하자로 본다.

요컨대 다수 판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엄격일치성 규칙은 매수인의 이익보호보다는 신용장 자체의 일반적·상업적 본질에서 연유된 것이며, 이 규칙은 신용장 고유의 상업적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⁷⁾

(2) 상당일치성 규칙(substantial compliance rule)

상당일치성 규칙은 엄격성의 법체계를 거부하고, 소위 “상당성”(substantiality), “형평법”(equity) 등의 명제에 부합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예컨대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 사건¹⁸⁾과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ional Bank* 사건¹⁹⁾의 판례가 대표적이다.

첫째의 *Banco Espanol* 사건²⁰⁾에서 신용장은 “The goods are in conformity with the order.”라는 기재의 매수인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당초의 주문된 제목은 “stock sheets”(재고서)이었기 때문에 수익자가 “order”(주문서)라는 표현 대신에 “whole ... [was] found conforming to the conditions stipulated on the Order-Stock sheets.”라는 기재의 검사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법원은 검사증명서는 일치하는 서류라고 판시하였다. 신용장에서 단순히 검사증명서가 요구된 경우, 은행은 UCP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²¹⁾

둘째의 *Flagship* 사건²²⁾도 수익자 서류는 신용장의 용어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상당일치성 규칙을 대표하고 있다. 즉, 신용장은 “환어음”(draft)이 ... 합의서에 관련 있음을 기재한 수익자 진술서를 요구하였는데,

15) *Courtaulds N. Am. v. North Carolina Nat'l Bank*, 528 F 2d 802 (4th Cir. 1975).

16) *Davidcraft Corp. v. First National Bank*, No. 83 C. 5481 (ND Ill. Jan. 6, 1986).

17) Boris Kozolchyk,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56 *Brooklyn L. Rev.* 45 (1990).

18) 385 F 2d 230 (1st Cir. 1967); Dolan, *op. cit.*, p. 6-46.

19) 569 F 2d 699 (1st Cir. 1978); *ibid.*, p. 6-49.

20)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 385 F 2d 230 (1st Cir. 1967).

21) Article 14(f) of UCP 600 provides some of that guidance that for the other documents, the document examiner may accept a document that fail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concerning data content and certificate.

22)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ional Bank*, 569 F 2d 699 (1st Cir. 1978).

실제의 수익자 진술서에는 “신용장”(L/C)이… 합의서에 관련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환어음이 근거한 신용장 전체가… 합의서에 관련 있기 때문에, 수익자 진술서는 신용장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타 Exotic Traders Far East Buying Office v. Exotic Trading USA, Inc. 사건²³⁾에서도 앞의 Banco Espanol 사건을 적용하여 서류심사자가 오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이탈을 허용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신용장은 “FOB Seoul”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상업송장은 “FOB Korea” 인도조건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기타 서류(AWB, C/O 등)상 물품이 “Seoul”에서 적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히 일치하다고 판시하였다.

상당일치성 규칙의 핵심은, 예컨대 수익자가 사소한 실수로 “i”자의 윗점을 찍지 아니하였거나 “t”자의 횡선을 긋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상과의 계약에서 이익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한 것이다.

2. UCP와 UCC상의 서류심사기준

(1) UCP 서류심사기준의 발전

신용장 통일규칙(UCP)은 1933년 제정 후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및 1993년 현행본에 이르기까지 서류심사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해 왔다.

① 1933년 UCP 제정본은 제10조에서 “은행은 반드시 모든 서류와 문서가 문면상 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주의를 다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류심사기준을 선언하였다.²⁴⁾

② 1951년 UCP 개정본은 제9조에서 종래의 UCP 내용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추가로 제10조에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으로 규정된 것과 다른 경우 개설은행은 반드시 이를 수령한 즉시 클레임 제기의 여부를 서류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와 함께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반송 중에 있는지를 기재하여 전신이나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청구은행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를 심

23) 717 F. Supp. 14 (D. Mass. 1989).

24)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and papers with care so as to ascertain that on their face they appear to be in order.”(Morris S. Rosenthal, *Techniques of International Trade*, McGraw-Hill Book Co., Inc., 1950, p. 520).

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²⁵⁾

③ 1962년 UCP 개정본 제7조에서는 은행은 반드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다. 이때부터 서류심사기준으로서 “상당한 주의”(with reasonable care)의 의무조항이 등장하였다. 이어 제8조에서는 종래의 UCP 제10조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자서류의 클레임 처리절차와 서류심사기간, 즉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④ 1974년 UCP 개정본 제7조는 종래의 규정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하되, 이때부터 서류가 문면상 상호 모순되는 경우 이를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²⁶⁾ 이어 제8조 c항 내지 e항에서는 종래의 UCP 제8조와 동일하게 하자서류에 관한 클레임 처리절차를 규정하였다. 다만 클레임 통고는 전신이나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지체 없이”(without delay) 하여야 하며, 동조 f항에서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유 또는 반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클레임의 권리가 배제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²⁷⁾

⑤ 1983년 개정 UCP 400은 제15조에서 종래의 제7조와 동일하게 서류심사의 상당한 주의의무와 서류 상호간의 모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어 제16조 b항 내지 e항에서 종래의 제8조 c항 내지 f항과 동일하게 하자서류의 클레임 절차를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송부은행에게 이미 지급되었을 수 있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²⁸⁾

⑥ 1993년 개정 UCP 500은 제13조에서 종래의 제15조와 동일하게 서류심사의무를 규정하되, 서류일치성 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표준은행 관습”에 따른다는 규정²⁹⁾, 신용장에 요구되지 아니한 서류(non-required

25) “The Issuing Bank shall have a reasonable time to examine the documents.”

26)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consistent with one another will be considered as not appearing on their face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27) “If the issuing bank fails to hold the documents at the disposal of the remitting bank, or fails to return the documents to such bank, the issuing bank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relative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was not effec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28) “The issuing bank shall then be entitled to claim from the remitting bank refund of any reimbursement which may have been made to that bank.”

29)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documents)와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은 이를 무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또 서류심사기간은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 내의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간을 적시하였다.³⁰⁾

이어 UCP 500 제14조에서는 종래의 제16조 취지를 계수하여 하자서류의 클레임절차를 규정하되, 개설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서류의 권리포기(인수) 여부를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 1회의 거절통고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⑦ 2007년 7월 1일 발효될 UCP 600상의 서류심사규정은 i) 제14조 서류심사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ii) 제15조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iii) 제16조 하자서류·권리포기·통고(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iv) 제17조 원본서류와 사본(original documents and copies) 등이며, 이들 내용은 이하 제3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2) UCC상의 서류심사기준

미국 통일상법전³¹⁾(UCC)은 서류심사기준에 관하여 제5-108조 a항에서 “제5-109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인은 본조 제e항에 명시된 표준관습에 의한 판단에 따라,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한 제시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113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의뢰인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설인은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제시를 지급거절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 동조 제e항에서 “개설인은 신용장을 정규적으로 개설하는 금융기관³²⁾의 표준관습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설인의 표준관습에 대한 준수 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맡길 문제이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표준관습의 증거를 제시

30) “The Issuing Bank, ... shall each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 to examine the documents and determine whether to take up or refuse the documents and to inform the party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accordingly.”

31) UCC 제5편은 1951년 제정된 후 변화된 신용장관습을 수용하기 위해 ‘통일주법전국위원회’(NCCUSL)와 ‘미국법률연구소’(ALI)에 의하여 1995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는 1996년 1월부터 채택하도록 각 주의 입법부에 제출되었다(Sandra S. Stern, “Varying Article 5 of the UCC by Agreement”, 114 *Banking Law Journal* 6 (1997), p. 516).

32)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이라 함은 은행, 보험회사, 은행소유의 담보회사, 상호기금, 연금관리기관 등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할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UCC가 지급제시에 관한 엄격일치성 규칙만을 채택하고, 각국의 판례나 UCP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당일치성 규칙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다.³³⁾ 다만 엄격일치성 여부의 판단은 신용장을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표준관습에 따르도록 하고, 그 법원(法源)으로서 UCP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당일치성 규칙에 대한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UCC의 엄격일치성은 서류요건과 서류외요건, 예컨대 지급청구의 제시기일, 제시방법 및 방식 등 제시요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① UCC 제5-108조 a항에 의하면, 서류의 문면이 신용장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엄격일치성이란 신용장조건과의 기계적인 일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UCC 규정은 선의원칙이나 신의원칙에 반하는 소위 권리남용을 위한 완전일치주의로까지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이를 “표준관습”의 범위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CC가 엄격일치성의 판단을 표준관습의 범위내에서 행하도록 하는 입장은 *New Braunfels National Bank v. Ordiorne* 사건³⁴⁾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용장에는 “Letter of Credit No. 86-122-S”라고 기재한 환어음을 요구하였는데, 제시된 환어음상에는 “Letter of Credit No. 86-122-5”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은 관습상 끝자리의 “S”자가 예비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시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은행에 제시된 선화증권상에 수화인의 명의를 “Muhammad Soran” 대신에 “Sofan”으로 기재되어 있거나³⁵⁾, 또는 신용장에는 1월 31일까지 선적하도록 하였는데 선적서류상에 2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물품을 선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거나³⁶⁾, 또는 상업송장상에 물품명세가 “100 % Acrylic Yarn”(아크릴 방사) 대신에 “Imported Acrylic Yarn”라고 기재되어 있는³⁷⁾ 등의 경우에

33) UCC 제5-108조, 주석 제1항;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2, pp. 352~354.

34) 780 SW 2d 313 (Tex. Ct. App. 1989);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114 *Banking Law Journal* 1 (1997), p. 58.

35) *Beyene v. Irving Trust Co.*, 762 F 2d 4, 6 (2th Cir. 1985).

36) *VoestAlpine International Corporation v. Chase Manhattan Bank, Ltd.*, 707 F 2d 680 (2th Cir. 1983).

37) *Courtaulds North America, Inc. v. North Carolina National Bank*, 528 F 2d 802, 806-807

는, 이는 모두 지급거절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하자가 된다.

은행은 표준관습 이외에 특정거래의 관행을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 예컨대 개설은행은 해상거래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당면하는 보통의 관행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신용장이나 송장상에 기재된 물품명세에 관련된 특정거래에서 사용되는 유사어까지 이해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³⁸⁾

즉, 은행은 서류하자로 인한 상업적인 효과(commercial impact)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결국 엄격일치성 규칙은 서류하자로 인한 상업적인 효과로부터 은행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UCC 제5-108조 a항에서 요구하는 지급제시의 엄격일치성은 서류의 문면요건뿐만 아니라 서류 이외의 요건, 예컨대 지급청구의 제시기일과 제시장소 등에 관한 비서류적인 요건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³⁹⁾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그 유효기일 이전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앞으로 지급제시를 행하도록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급제시는 반드시 유효기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UCC에서는 서류심사기간 동안에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과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의 환거래은행이 거의 없는 국내은행이 개설의뢰인을 위한 서류심사업무만을 대행할 때, 이러한 지방관습 또는 지역관습이 표준관습으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다.⁴⁰⁾

따라서 은행은 UCC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치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관습 또는 지역관습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서류의 문면요건뿐만 아니라 서류 이외의 제시요건 등도 엄격히 준수되었는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4th Cir. 1975).

38) UCC 제5-108조 f항, 주석 제10항.

39) UCC 제5-108조, 주석 제1항.

40) UCC 제5-108조, 주석 제2항; Boris Kozolchyk, "Towards New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 The Methodology of the Proposed Revision", *Commercial Law Annual* (1991), p. 381.

3. ISBP(국제표준은행관습)의 성립

(1)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의미

UCP 등에서 서류심사기준으로 언급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⁴¹⁾

① 국제표준은행관습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고⁴²⁾,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준수되어 온 관습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준수되어 오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국제성”(internationality)을 갖추고 있는 관습이어야 한다.

② UCP에서는 “은행관습”(banking practice)을 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의무와 책임, 거래의 위험 및 신용장의 효용성 등에 대한 배분이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⁴³⁾

③ 국제표준은행관습은 “UCP상에 반영되어 있는”(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관습을 전제로 한다. 이는 UCP상의 명시규정만을 가리킨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 규칙에 조문화되지 아니한 수많은 국제은행관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의 의미를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면, 시대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⁴⁴⁾ 따라서 이는 UCP상의 명시규정뿐만 아니라, 아직 조문화되지 아니한 국제은행관습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조문화는 권위 있는 기관조직체와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ICC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로부터 생산된 관련 자료는 결과적으로 모두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주에 포함된다.

요컨대 UCP 등에 언급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을 형성하는 자료로는 i) 현

41) UCP 500 제13조 a항(UCP 600 제14조 d항); 양영환·오원석·서정두,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4. 3, pp. 5~6.

42) “국제적”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을 때를 말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어느 은행지점들 사이의 거래는 국제적이다.

43) Boris Kozolchyk, “Re UCP Article 13 (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11 Letter of Credit Update 11 (1995), p. 32.

44) Gustavus, *op. cit.*, p. 62.

행 UCP의 본문조항, ii) UCP의 본문조항을 해설한 ICC 각종 공표물⁴⁵⁾, iii) ICC 은행위원회의 결정과 의견 및 이를 분석한 사례집⁴⁶⁾, iv) ICC와 제휴한 주요 금융기관의 결정과 의견 및 공표물⁴⁷⁾, v) ICC의 요청에 의한 신용장분쟁 전문가그룹의 의견과 신용장법의 저명한 논문자료 등이 있다.⁴⁸⁾

그러나 특정의 관습이 국제표준은행관습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용장서류가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UCP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ICC는 그 판단을 은행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본다.⁴⁹⁾

법원에서조차 서류일치성 여부의 판단시 신용장상에 UCP 준거문언이 있으면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할 것이나, 이 규칙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립된 국제표준은행관습, 기타 은행간 내부관습, 사회적인 표준관습, 국제은행 및 국제신용장재판부의 표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심지어 은행전문가들의 자문을 비롯한 모든 근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⁵⁰⁾

(2) ICC에 의한 “ISBP”의 제정

ICC는 2002년 10월에 UCP 500의 실무적용상 보완서로서,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라는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제정하였다.⁵¹⁾ 그렇다고 하여 ISBP는 UCP의 부칙이나 해석서 또는 개정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UCP 상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명문화하는데 기본취지를 두었으며, 이는 UCP의 개정과는 관계없이 영속적인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45) ICC,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and 400 Compared*, Pub. No. 511 (1994);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Pub. No. 515 (1994); *The New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Pub. No. 516 (1994) 등이 이에 해당한다.

46)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ibid.*(1987~1988); *ibid.*(1989~1991);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Vol. 1, 1989)*; *ibid.*(Vol. 2, 1991); *Case Studies on Documentary under UCP 500 (1995)* 등이 이에 해당한다.

47) 대표적으로 USCIB에서 발행하는 “White Books”이 이에 해당하는 공표물이다.

48) James E. Byrne, “UCP 500 Explored :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Standard Banking Practice, 7 *Letter of Credit Update* 6 (1991), p. 12.

49) James E. Byrne, “Revised UCC Section 5-108 (e) :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1997), p. 422.

50) Dolan, *op. cit.* 1994 cumulative supplement No. 1, p. S4.13.

51)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 No. 645, 2003. 1, p. 3.

ISBP의 제정과정은 2000년 5월 ICC 은행위원회에서 UCP 500 이후 2000년까지 ICC에 접수된 600개 이상의 교육질의를⁵²⁾ 바탕으로 UCP 500에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조문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들 관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작업부를 설치한 데서 시작되었다. 동 작업부는 미국의 Donald R. Smith(시티은행)와 덴마크의 Ole Malmqvist(단스케은행)를 공동의장으로 위촉하고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ICC의 동 작업부는 우선 전세계의 신용장 실무가들이 사용하는 서류심사목록을 수집하고, ICC 각 국내위원회에 요청하여 45개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로부터 공식 발표된 의견(Opinions), 결정(Decisions), 입장서(Position Papers) 등을 연결시키고 심지어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가의견규칙)의 결정(Decisions)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즉, ISBP는 2000년 5월부터 ICC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 의하여 2년 6개월 동안 14차례의 작업부 회의와 4차례의 초안작업을 거쳐 200개 조항의 완성본이 제출되고, 2002년 10월 30일 ICC 은행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다.

ISBP의 구성체계는 UCP 500에 규정된 대상서류에 관하여 총 11장 91절 200개 조항의 서류심사목록으로 되어 있다. 즉, ① 예비적 고려(제1조~제5조), ② 일반원칙(제6조~제44조), ③ 환어음과 만기일 계산(제45조~제58조), ④ 송장(제59조~제72조), ⑤ 해양/해상선화증권(제73조~제99조), ⑥ 용선계약부선화증권(제100조~제119조), ⑦ 복합운송서류(제120조~제143조), ⑧ 항공운송서류(제144조~제169조), ⑨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제170조~제182조), ⑩ 보협서류(제183조~제195조), ⑪ 원산지증명서(제196조~제200조) 등이다.⁵³⁾

궁극적으로 ISBP는 UCP상의 일반원칙과 신용장 실무가들의 업무관행 사이에 부족한 공백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ISBP는 해당 국가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하더라도 UCP와 함께 신용장거래의 일상업무에 널리 활용될 것이다.⁵⁴⁾

52) Gary Collyer, "UCP 500 - Past, Present and Future", *Seminar at Seoul*, Sep. 3, 2003, Session 2. 전체 질의의 58.6%가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등에 집중되었다.

53) 양영환·오원석·서정두, 전제서, pp. 7~8.

54) Donald R. Smith,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 1.

ISBP는 국제표준이므로 서류심사자들이 이를 신용장거래에 활용하면 각자의 관습을 전세계의 다른 심사자들의 관습과 일치시킬 수 있고, 서류를 제시하는 초기부터 불일치로 인한 UNPAID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줄 것이다.

Ⅲ. UCP 서류심사기준상의 문제점

1. UCP 600 서류심사기준 요약

(1) 서류심사의 일반원칙(제14조)

UCP 600은 총 39개 조항 중 제14조~제17조에서 모든 서류의 공통심사기준, 그리고 제18조 이하 상업송장, 운송·보험서류 등 특정서류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자에 관하여만 논하고자 한다.

특히 제14조는 UCP 500 제13조, 제14조 b항,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c항, 제43조 a항 등에 산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은행은 반드시 제시⁵⁵⁾를 심사하여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서류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a항). 여기서 “은행”이란 지정사항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및 개설은행을 모두 포함한다. 이 조항은 UCP 500 제13조 a항 1문의 내용을 재정리하면서, 1962년 UCP 개정 때부터 내려온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의 의무규정을 삭제한 것이 특이하다.

② 은행은 제시의 일치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제시일로부터 최대한 제5은행영업일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 서류심사기간은 향후에 남아있는 유효기일이나 최종일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제b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3조 b항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서, i) 구규칙이 서류심사기간 동안의 업무범위를 서류심사, 수리여부의 결정과 결과통고까지로 지정하였는데, 개정규칙은 일치성 여부의 결정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며⁵⁶⁾, ii) 구규칙이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내에서의 상당한 기간”으로

55) “제시”(presentation)라 함은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 신용장하의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의미한다(UCP 600 제2조).

56) 다만 이 조항의 불완전한 내용기술은 이하 제16조 d항의 규정에 의하여 커버되어 있다.

규정하였는데, 개정규칙은 제시의일로부터 “최대한 제5은행영업일”로만 규정하고⁵⁷⁾ 이 기간은 남은 신용장 유효기일이나 최종일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즉, 서류심사기간이 2일 단축되고, 1951년 UCP 개정 때부터 내려온 서류심사의 “상당한 기간”이란 개념이 삭제되었다.

③ 수익자나 그 대리인에 의한 제시는 반드시 선적일자 이후 21영업일까지, 그리고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제c항). 이 조항은 UCP 500 제43조 a항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서, 기본취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모든 신용장은 유효기일에 추가하여 서류의 제시기한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시기한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UCP의 법정기한이 적용된다.

④ 어느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상호관계에서 해석할 때 당해 서류, 기타 규정된 서류 및 신용장상의 자료와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제d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3조 a항 2문~3문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으로서, 서류기재의 완전일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또 자료내용의 일치성 여부는 신용장,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상호관계에서 판단하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⑤ 서류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채무이행에 관한 명세는 상업송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한 일반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제e항). 이 조항은 UCP 500 제37조 c항 2문의 내용을 분리 옮겨놓고 물품명세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채무이행의 명세에 관하여도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다.

⑥ 신용장에서 운송·보험서류, 상업송장 외의 기타 서류(other documents)를 요구하되 발행인이나 자료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당해 서류의 기능을 완수하고 다른 요구된 서류나 신용장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시된 대로 인수하여야 한다(제f항). 이 조항은 UCP 500 제21조의 규정을 재정리한 것으로서, 기본취지는 동일하되 기재내용의 모순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서류의 기능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⁵⁸⁾

⑦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무시하여야 하며 또한 제시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제g항). 이 조항은 UCP 500 제

57)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Art. 14(b) of UCP 600).

58) ISBP 제24조; “... 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완수하도록 나타나 있어야 한다.”(ISBP 제43조).

13조 a항 4문~5문의 내용을 변경 없이 재정리한 것으로서, 물론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아무런 책임 없이 그대로 송부할 수도 있다(구규칙 참조).

⑧ 신용장이 어느 조건을 기재하면서 이 조건의 일치성을 명시할 서류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제h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3조 c항의 내용을 변경 없이 재정리한 것이다.

⑨ 서류의 일자는 신용장의 개설일자 이전으로 기재될 수 있지만, 결코 당해 서류의 제시일자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제i항). 이 조항은 UCP 500 제22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물론 이러한 이전일자의 서류는 신용장 유효기일과 이 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개정규칙에서는 서류의 제시일자 이후로 기재된 서류가 기한내에 제시된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이는 당연히 용인되는 사무착오로 보아야 한다.⁵⁹⁾

⑩ 서류상에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는 신용장이나 기타 서류상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반드시 신용장상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운송서류상에 수화인이나 착화통지처의 세부사항으로 기재될 때에는 반드시 신용장의 기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기타 팩스, 전화, e-메일 등 연락처의 세부사항이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경우,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제j항).

이 조항은 ISBP 제60조~제61조 송장의 정의와 주소규정을 확대하여 사소한 하자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신설한 것이다.⁶⁰⁾ 예컨대 신용장상의 수익자 주소가 “XXX S.A. Schweiz, Country Z”인 경우, 이에 요구된 팩스 전송문의 발행인 주소를 “XXX S.A. Schweiz, Filial City”(Country Z)라고 기재한 것은 하자사유가 되지 않지만⁶¹⁾, 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 주소가 “Company F., CZ Strasse 2, City A”(Country G)라고 기재된 경우, 송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상에 수화인 주소를 “Company F., CZ Strasse 15, City A, Country D”라고 국가명을 달리 표기한 정도의 주소 차이는 충분한 거절사유가 된다.⁶²⁾

59)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489, 1991, Case No. 231.

60) 요컨대 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상에 지정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명의 앞으로 발행한 것 이어야 하지만, 각각 주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텔렉스·팩스 번호 등은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기재하더라도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ISBP 제60조~제61조).

61) ICC,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R. 233.

62) ICC Publication No. 632, R. 229; 양영환·오원석·서정두, 전거서, pp. 63~64.

① 모든 서류상에 명시되는 물품의 화주 또는 송화인은 반드시 신용장상의 수익자와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제k항). 이 조항은 UCP 500 제31조 iii호 제3자 명의(third party)의 운송서류 규정을 모든 서류에 확대 적용하여 개정한 것이다. 즉, 송장, 운송·보험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상의 화주 또는 송화인 란에는 신용장 수익자와 동일한 명의와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운송서류의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수화인 또는 착화통지처로 요구된 때에는 반드시 신용장상에 기재된 명의와 주소가 일치하는 개설의뢰인을 기재하고 있어야 하며(동조 j항), 또 ISBP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물품의 수화인이 지정된 경우(기명식), 운송서류는 지시식으로 발행할 수 없고, 반대로 지시식 운송서류가 요구된 경우 기명식 운송서류를 발행할 수 없다.⁶³⁾

② 운송서류는 이 규칙의 운송서류요건(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을 충족하는 한, 선박이나 운송수단 소유자 이외의 당사자가 발행한 것도 유효하게 인수될 수 있다(제I항). 이 조항은 UCP 500 제30조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서류규정을 삭제한 대신에 신설한 것으로서, 운송서류는 발행인이 선박 소유자인 여부보다는 발행자격이 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수가능하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2) 일치하는 제시⁶⁴⁾의 처리절차(제15조)

UCP 600 제15조는 UCP 500 제9조 a항~b항, 제14조 a항 등에 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지정은행별로 신용장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습 등에 '일치하는 제시'의 처리절차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① 개설은행⁶⁵⁾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라고 결정한 때에는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제a항). 여기서 "수리"(honour)라 함은 i) 일람출급 신용장인 경우 일람한 즉시 지급하고, ii) 연지급 신용장인 경우 연지급확약을 발급하고 만기에 지급하고, iii) 인수신용장인 경우 수익자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UCP 600 제2조). 위 조항은 제7조 a항 개설은행의 확약조항과 중첩

63) ISBP 제84조, 제107조 및 제128조; ICC Publication No. 632, Rs. 69 and 99.

64)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라 함은 신용장의 제조건, 이 규칙의 적용가능한 규정 및 국제표준은행관습에 일치하는 제시를 의미한다(UCP 600 제2조).

65) "개설은행"(issuing bank)이라 함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르거나 또는 은행 스스로를 대리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의미한다(UCP 600 제2조).

되지만 일치하는 제시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⁶⁾

② 확인은행⁶⁷⁾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라고 결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에 수리 또는 매입하고⁶⁸⁾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제b항). 이 조항은 제8조 a항 확인은행의 협약조항과 중첩되지만,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고 서류의 발송의무까지 명확히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③ 지정은행⁶⁹⁾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라고 결정하고 이에 수리 또는 매입한 때에는 반드시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제c항). 지정은행은 확인은행이 아닌 한, 자신이 명시적인 합의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시를 수리 또는 매입할 의무가 없으며, 설사 서류를 수령, 심사 및 발송하더라도 수리 또는 매입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UCP 600 제12조 a항과 c항). 그러나 위 조항에 따르면, 지정은행은 제시를 수리 또는 매입한 때에는 반드시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 하자서류 · 권리포기 · 통고절차(제16조)

UCP 600 제16조는 UCP 500 제14조 b항~e항에 규정되었던 하자서류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재분류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에 수리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제a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4조 b항에 규정된 지정은행,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의 하자서류 수리거절권을 변경 없이 선언한 것이다.

② 개설은행은 불일치한 제시에 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서류심사기간내에 개설의뢰인과 하자의 권리포기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제b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4조 c항에 규정된 개설은행의 하자서류 권리포기 교섭권을 변경 없이 승계한 것이다. 개설은행의 하자교섭권이란 지금까지 구규칙 제14조 f항에 규정되어 오다가 개정규칙에서 삭제된 송부은행의 하자서류 유보조건부

66) Hennie T.J. van Diemen, "Pluses and minuses in recent UCP drafts", ICC DCINSIGHT, Vol. 12 No. 1, 2006. 1-3, p. 6.

67)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라 함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상에 자신의 확약을 추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UCP 600 제2조).

68) "매입"(negotiation)이라 함은 지정은행이 (동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및/또는 일치하는 제시하의 서류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UCP 600 제2조).

69)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라 함은 신용장상에서 수리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 또는 자유사용 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UCP 600 제2조).

또는 보상조건부 매입(L/I Nego.) 등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③ 은행의 하자서류 수리거절은 반드시 한 차례의 통고(single notice)를 행하여야 하며, 당해 통고상에는 반드시 i) 수리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취지, ii) 제시인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유하는지, 서류를 반송 중에 있는지 또는 예전의 지시대로 행동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c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4조 d항 i호~ii호의 내용을 세분하고 추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단지 서류를 보유할 시는 제시인의 처분권하에 둔다는 것보다 제시인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유함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④ 은행의 하자통고기한은 반드시 제시일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의 종료시간까지 전신이나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행하여야 한다(제d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4조 d항 i호의 규정 중에 하자통고의 기한과 수단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하자통고의 기한이 구규칙의 제7은행영업일에서 2일 단축되고, 동 기간내에서도 “지체없이”(without delay) 하라는 내용을 삭제한 점이 다르다.

⑤ 은행은 하자서류를 거절한다는 취지와 제시인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을 통고한 후에도,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동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제e항). 이 조항은 UCP 500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⑥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본조에 규정된 하자서류의 처리절차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가 불일치하다고 주장할 권리로부터 배제된다(제f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4조 e항의 내용을 수정 없이 규정한 것이다.

⑦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하자서류의 수리거절을 통고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모든 보상금의 원리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제g항). 이 조항은 UCP 500 제14조 d항 iii호의 내용을 수정 없이 규정한 것이다.

(4) 원본서류와 사본의 결정(제17조)

UCP 600 제17조는 UCP 500 제20조 b항~c항의 내용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원본서류의 결정에 관한 정책성명서”(1999.7.29), ISBP 제31조~제35조 원본과 사본규정 등에 일치시키고 있다.

① 신용장상에 요구된 서류는 반드시 1통 이상의 원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제a항). 이 조항은 UCP 500에는 없으나, ISBP 제3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한 것이다. 즉, 신용장에서 사본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요구된 서

류는 반드시 1통 이상의 원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시할 원본의 수는 신용장이나 UCP에서 요구된 수 이상 또는 서류상에 기재된 수 이상이어야 한다.⁷⁰⁾ 특히 복합운송서류나 해상운송서류 및 보험서류의 경우 서류상에 2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전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⁷¹⁾

② 서류상에 원본임을 부인하는 표기가 없는 한, 외관상 서류발행인의 원천적인 서명, 표지, 타인 또는 부표가 내포된 서류는 원본으로 본다(제b항). 이 조항은 UCP 500 제20조 c항 i호의 내용을 역개정한 것으로서, 구규칙은 “원본”의 표기가 없는 서류는 사본으로 보았으나, 개정규칙은 서류상에 원본임을 부인하는 표기가 없는 한, 서류발행인에 의한 원천적인 서명, 표지, 타인 또는 부표가 있는 서류도 원본으로서 취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⁷²⁾

③ 서류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i) 서류발행인이 직접 수기, 식자, 천공 또는 타인한 서류, ii) 서류발행인의 원천적인 필묵지상에 나타나 있는 서류, iii) “원본”이란 표기가 있는 서류 등은 원본으로서 인정한다(제c항).

이 조항은 UCP 500 제20조 b항의 내용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서, 구규칙대로 서류상에 “원본”의 표기가 있으면 그것이 복사기기·자동기기·전산기기·탄소복사지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도 당연히 이를 원본으로 보며⁷³⁾, 또 개정규칙에서는 i) “원본”이란 표기가 없더라도 외관상 서류발행인의 원천적인 서명, 표지, 타인 또는 부표가 내포된 서류⁷⁴⁾, ii) 서류발행인이 직접 수기, 식자, 천공 또는 타인한 서류, iii) 서류발행인의 원천적인 필묵지상에 나타나 있는 서류 등도 원본으로서 인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서류상에 “원본”이란 표기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그 작성방법에 달려 있다.⁷⁵⁾

④ 신용장에서 서류의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 중의 어떠한 제시라도 허용된다(제d항). 이 조항은 이번에 신설한 것으로서, 특히 ISBP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본 대신에 원본을 인수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신용장상에 “원본서류는 인수불가능함.” 등 원본금지의 표현을 두어야 한다.

70) ISBP 제32조; ICC Publication No. 632, R. 137.

71) UCP 600 제19조~제22조 각 a항 및 제28조 b항; ICC Publication No. 632, R. 215.

72) ICC Publication No. 632, Rs. 127 and 292; 대판 2002.6.28.선고, 2000다63691.

73) UCP 500 제20조 b항 i호~ii호; ICC Publication No. 632, Rs. 127 and 25.

74) UCP 600 제17조 b항; ICC Publication No. 632, R. 102.

75) UCP 600 제17조 c항 i호~ii호; ICC Publication No. 632, R. 292.

신용장에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i) “송장”(invoice), “한 통의 송장”(one invoice), “송장 1통”(invoice in 1 copy) 등의 표현은 송장 원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ii) “송장 4통”(invoice in 4 copies)의 표현은 원본을 1통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하면 되며, iii) “한 통의 송장 사본”(one copy of invoice)의 표현은 사본으로 충족되지만, 서류의 사본 대신에 원본을 인수하는 것이 표준은행관습이다. 다만 신용장에서 “송화인용 사본”(copy for the consignor) 등의 용도를 표시하도록 요구한 경우, 이러한 용도의 표시가 없는 서류는 하자가 된다.⁷⁶⁾

⑤ 신용장에서 “부분”(duplicate), “제2통”(two fold), “제2사본”(two copies) 등의 용어로 복본 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적어도 1통의 원본과 나머지 통수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된다(제e항). 이 조항은 UCP 500 제20조 c항 ii호의 내용을 수정 없이 승계한 것이나, 위 개정규칙 제17조 a항과 내용이 중첩된다.

또 ISBP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가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된 때에는 “원본”, “부분”, “제3본”, “제1원본”, “제2원본” 등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기가 전혀 없는 서류는 원본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서류상에 “부분”, “제3본” 등으로 타인된 서류는 “원본”의 표기가 없어도 인수된다.⁷⁷⁾

2. 서류심사기준상의 일부 문제점

(1) “상당한 기간” 규정삭제 문제

UCP 600은 서류심사기간에 관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의 개념을 포기하고 구체일자 제5은행영업일을 규정하였다(제14조 b항). 서류심사기간에 관한 “상당한 기간”의 개념은 1951년 UCP 개정 때부터 등장한 후 1993년 개정본에서는 “제7은행영업일내의 상당한 기간”으로 구체화된 바 있으며, 미국의 UCC는 아직도 “제7영업일내의 상당한 기간”을 고수하는 입장이다.⁷⁸⁾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런던에서의 개념과 세계 다른 지역에

76) ISBP 제33조 a항~c항; ICC Publication No. 632, Rs. 111, 135, 211 and 293.

77) ICC Publication No. 632, Rs. 126, 131 and 160.

78) “개설인은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개설인의 제7영업일의 말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받은 후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UCC 제5-108조 b항).

서의 개념이 전혀 다를 수 있고, 대부분의 은행현장에서 서류심사기간은 항상 제7은행영업일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다.⁷⁹⁾ 따라서 UCP 600은 서류심사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구체일자 제5영업일만을 선택한 것이다. 개설은행은 최대한 제5영업일내에 서류심사와 거절통고, 개설의뢰인과의 권리포기(waiver) 교섭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권리포기의 합의가 늦어질 경우 이후에도 서류를 보유하고 있겠다는 사항을 거절통고서에 삽입하여야 한다.⁸⁰⁾

그러나 제5은행영업일이 모든 경우에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는 1~2일의 심사기간이면 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UCP 600이 서류심사기간을 “최대한 제5은행영업일”로 규정하였더라도, 관할권과 준거법에 따라서는 합리성을 둘러싼 문제가 일소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간단한 서류심사를 제5영업일을 보장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은행이 간단한 하자도 제5영업일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유보하고 있을 경우 수익자는 동 기간내의 하자치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⁸¹⁾

따라서 ISP98에도 규정되고 UCP 개정작업부에서 검토되었던 “안전한 피난처”(safe harbour) 원리⁸²⁾, 즉 최소심사기간(예, 3일)을 명시하되 “상당한 기간”의 개념을 유지함으로써 사정에 따라 4~7일까지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UCP의 법적 안정성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2) “지체 없이” 하자통고삭제 문제

UCP 600은 서류의 하자통고를 그 수령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내에 “지체 없이”(without delay) 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지 제5은행영업일내에 서 전신이나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제16조 d항).

구규칙하에서 은행은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내에 서류심사와 하자통고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일치의 클레임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했다(구규칙 제14조 d항 i호와 e항). UCP 600은 이러한 은

79) John Turnbull, “View of the UCP Consulting Group”, *ICC DCINSIGHT*, Vol. 12 No. 1, 2006. 1-3, p. 3.

80) UCP 600 제16조 b항 및 c항 iii호 b목.

81) Kim Christensen, “‘Reasonable’ refusals”, *ICC DCINSIGHT*, Vol. 11 No. 1, 2005. 1-3, pp. 14~15.

82) Pavel Andrlle, “On ‘reasonable time’ and holding documents at disposal of the presenter”, *ICC DCINSIGHT*, Vol. 11 No. 4, 2005. 10-12, pp. 6~7.

행의 강박문제를 해소하고 앞의 규정과 일치시켜 하자통고는 단지 제5은행영업일내에서 전신이나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이를 행하도록 개정한 것이다.⁸³⁾

그러나 하자통고를 “지체없이”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5은행영업일을 포함으로써, 수익자에게는 통고지연으로 인하여 하자치유의 기회뿐만 아니라, 즉시 선적을 중단하고 환적이나 재판매할 기회까지 상실할 수 있고, 결국 신용장 지급시스템의 편익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⁸⁴⁾

(3) 신용장 당사자의 “주소” 문제

UCP 600은 서류상에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address)는 신용장상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내에 있는 한, 신용장이나 다른 서류상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4조 j항).

현실적으로 신용장하자의 상당부분이 당사자 주소의 세부사항, 예컨대 텔렉스·전화번호 등 기술적 하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하자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ISBP 제60조와 제61조는 송장의 경우 반드시 신용장 수익자의 명의로 발행하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하여야 하되, 이들 주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텔렉스·팩스 번호 정도는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UCP 600은 동 ISBP 규정을 확대·초월하여 운송서류(수화인이나 착화통지처)를 제외한 모든 서류상에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를 각각 동일한 국가내의 서로 다른 주소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철학이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앞서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국가, 예컨대 오스트리아 내에 “Franz Mayr Ltd.”란 명의의 전혀 다른 회사 또는 거소가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UCP가 이러한 정도의 차이까지 용인하도록 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이 규정은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⁸⁵⁾ 따라서 동일한 국가내의 서로 다른 주소의 표기를 허용하되, 전주소라도 동일하게 병기하도록 전제하여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

83) N.D. George, “Delete ‘reasonable time’ and ‘without delay’ from the UCP”, *ICC DCINSIGHT*, Vol. 11 No. 3, 2005. 7-9, pp. 15~16.

84) John F. Dolan, “Another view of notice ‘without delay’, disposal and preclusion”, *ICC DCINSIGHT*, Vol. 11 No. 2, 2005. 4-6, pp. 18~19.

85) Heinz Hertl, “Addresses, agents and transport documents”, *ICC DCINSIGHT*, Vol. 12 No. 1, 2006. 1-3, pp. 5~6.

(4) 서류의 “문면상” 규정삭제 문제

UCP 600은 서류일치성 여부에 관하여 과거 75년간 사용되어온 “문면상”(on their face)이란 표현을 모두 삭제하였다. 가끔 “문면상”의 표현은 뒷면에 대응되는 “앞면”(front)의 의미로 잘못 인식된 경우도 있었다.⁸⁶⁾ 서류는 앞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 규칙 제5조(서류거래)와 제14조 a항(…서류만에 기초하여) 등에 기본규정이 있으므로 이 표현을 삭제한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UCP 600 제14조 a항에서 은행의 서류심사의무를 규정하면서 일부러 한 조항에서 “문면상”의 표현을 남겨두었다고 하나, 이는 ‘옥의 티’로 보인다.

IV. 결 언 - 실무상 유의점

신용장거래의 서류심사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엄격주의가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완화되어 왔으며, 이는 최근의 ISBP, UCP 600 등을 통하여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UCP 600의 입안자들도 신용장의 상업적 고유목적과 활용도,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겠으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개정규칙은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가들은 특히 다음 몇 가지의 변화된 UCP 600 서류심사기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① 은행은 신용장 서류심사시 “상당한 주의”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서류심사은행의 주의의무는 1933년 UCP 제정 때부터 있었고, 1962년 개정 때부터는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이번에 삭제되었다.

② 서류심사기간은 “상당한 기간”의 개념과 관계없이, 은행이 제시일로부터 최대한 제5은행영업일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남은 신용장 유효기 일이나 최종일과 무관하기 때문에 환가료 산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서류상의 자료기재는 완전일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일치성 여부를 신용장,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상호관계에서 판단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신용장과 서류는 물론, 국제표준은행관습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 운송·보험서류, 송장 외의 기타 서류가 요구된 경우 자료내용상에 모순

86) Laurence A.J. Bacon, “Some key issues in the UCP revision”, ICC DCINSIGHT, Vol. 11 No. 1, 2005. 1-3, p. 5.

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서류는 그 기능을 완수하고 있어야 한다.

⑤ 서류상에 수익자나 개설의뢰인의 주소는 국가가 동일하게 기재되면 신용장이나 기타 서류상의 각 주소와 불일치하여도 무방하며, 팩스·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무시된다. 다만 운송서류상의 수화인이나 착화통지처는 예외이다.

⑥ 운송서류상의 제3자 명의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상에 화주나 송화인 표시는 신용장 수익자와 동일한 명의로 주소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⑦ 은행의 하자통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자가 아닌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유 또는 반송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또 통고기한도 제시의일로부터 “지체없이”가 아닌 제5은행영업일까지이다.

⑧ 신용장에서 사본을 허용하지 않은 한, 모든 서류의 제시는 반드시 1통 이상의 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의 수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⑨ 원본(original)의 인정범위는 서류상에 원본임을 부인하는 표시가 없는 한, i) 구규칙대로 “원본”의 표기가 있으면 복사기기·자동기기·전산기기·탄소복사지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이를 원본으로 보며, ii) “원본”의 표기가 없더라도 발행인의 원천적인 서명 등이 내포된 서류, iii) 발행인이 직접 수기, 식자, 천공 또는 타인한 서류, iv) 발행인의 원천적인 필묵지상에 나타난 서류 등을 원본으로서 인수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원본서류와 사본의 구분은 ICC 은행위원회가 발표한 “원본서류의 결정에 관한 정책성명서”(1999.7.29), ISBP 제31조~제35조 등을 참고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대한상공회의소, 「제5차 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 축조해설」, 1993. 6.
- 서정두, “수출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일치성의무에 관한 관습적 해석기준”, 「무역상무연구」 제2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2.
-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2.
- 양영환·오원석·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4.
- 양영환·오원석·서정두,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 삼영사, 2004. 3.
- Andrle, Pavel, “On ‘reasonable time’ and holding documents at disposal of the presenter”, *ICC DCINSIGHT*, Vol. 11 No. 4, 2005. 10-12.
- Bacon, Laurence A.J., “Some key issues in the UCP revision”, *ICC DCINSIGHT*, Vol. 11 No. 1, 2005. 1-3.
- Byrne, James E., “Revised UCC Section 5-108 (e) :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1997).
- Byrne, James E., “UCP 500 Explored :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Standard Banking Practice, 7 Letter of Credit Update 6 (1991).
- Christensen, Kim, “‘Reasonable’ refusals”, *ICC DCINSIGHT*, Vol. 11 No. 1, 2005. 1-3.
- Collyer, Gary, “UCP 500 - Past, Present and Future”, Seminar at Seoul, 2003. 9.
- Diemen, Hennie T.J. van, “Pluses and minuses in recent UCP drafts”, *ICC DCINSIGHT*, Vol. 12 No. 1, 2006. 1-3.
- Dolan, John F., “Another view of notice ‘without delay’, disposal and preclusion”, *ICC DCINSIGHT*, Vol. 11 No. 2, 2005. 4-6.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Rev. ed., Warren · Gorham & Lamont, 1996.
- George, N.D., “Delete ‘reasonable time’ and ‘without delay’ from the UCP”, *ICC DCINSIGHT*, Vol. 11 No. 3, 2005. 7-9.
- Green, “Letters of Credit and the Computerization of Maritime Trade,” 3

- Fla. International Law Journal 221 (1988).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114 Banking Law Journal 1 (1997).
- Hertl, Heinz, "Addresses, agents and transport documents", ICC DCINSIGHT, Vol. 12 No. 1, 2006. 1-3.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Vol. 1, 1989); *ibid.* (Vol. 2, 1991); Case Studies on Documentary under UCP 500 (1995).
- ICC,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2002. 6.
- ICC,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and 400 Compared, ICC Pub. No. 511, 1994.
-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ICC Pub. No. 515, 1994.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ICC Pub. No. 645, 2003. 1.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489, 1991.
-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ibid.* (1987~1988); *ibid.* (1989~1991).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and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11 Letter of Credit Update 11 (1995).
- Kozolchyk, Boris,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56 Brooklyn L. Rev. 45 (1990).
- Kozolchyk, Boris, "Towards New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 The Methodology of the Proposed Revision", Commercial Law Annual (1991).
- Note, "Letters of Cred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s," 50 Fordham L. Rev. 843 at p. 863 (1982).
- Rosenthal, Morris S., Techniques of International Trade, McGraw-Hill Book Co., Inc., 1950.
- Smith, Donald R.,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 Stern, Sandra S., "Varying Article 5 of the UCC by Agreement", 114 Banking Law Journal 6 (1997).
- Turnbull, John, "View of the UCP Consulting Group", ICC DCINSIGHT, Vol. 12 No. 1, 2006. 1-3.

ABSTRACT

Some Problems and Practical Notes on UCP 600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Seo, Jung Doo

In the transaction of credits, banks must examine the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bank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This period does not depend on any upcoming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Data in a document, when read in context with the credit, the document itself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 data in i) that document; ii)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 or iii) the credit.

When a bank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is complying, it must honour or negotiate. But, when a bank determine that a presentation does not comply, it may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When a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 That notice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Key Words : UCP 600, Credits, Documents, Examination
--